

(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-참조4)

2019. 11. 4.(월)10:00

본 회 의 장

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



성 남 시 의 회

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

-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!
그리고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 !
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재호입니다.
-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지난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과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“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” 에 대하여

발의의원 제안 설명과

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

관계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.

- 첫 번째, 유중진, 박은미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「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성남시 조직개편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규정 하고, 안 제11조 ‘간사’의 명칭을 ‘부위원장’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“원안가결” 하였습니다.

- 두 번째, 지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, 이준배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“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개정 규칙안은

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규칙안으로, 일부 조문과 심사 체크리스트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

- ▶ 안 제10조제1항 중 출장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“60일 이내” 에서 “30일 이내” 로 변경하는 것으로 “수정가결” 하였습니다.

○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

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
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
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영 발